**‘서있는 사람들’ 동아리 회칙**

**제 1장 총칙**

**제 1조 [동아리 명칭]**

1. 본 동아리의 명칭은 ‘서있는 사람들’(이하 서사)로 한다.

**제 2조 [목적]**

1. 본 동아리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연행예술분과 소속 중앙 어쿠스틱 밴드 동아리이다.

2. 본 동아리는 기존 가요 및 팝송을 어쿠스틱 악기와 화음으로 재해석해 편곡 및 각색하여 공연을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본 동아리는 무대 준비 이외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부원 간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동아리 소재]**

1. 본 동아리의 소재지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 학생회관 128호

**제 2장 임원진 및 집행부**

**제 1조 [임원진의 임기]**

1. 임원진은 회장, 부회장, 총무로 정의한다.

2. 임원진의 임기는 1, 2학기를 통틀어 약 1년으로 한다.

**제 2조 [임원진 선출 방식]**

1. 임원진의 선출은 연말 총회에서 동아리 내 투표로 선출된다.

2. 임원진 추천을 받고, 추천받은 인원의 한에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단일 후보의 경우, 과 반수의 찬성일 경우 선출된다.

3. 임원진은 해당 연도 동아리 활동 회원 내에서 선발한다.

4. 임원 중 한 명이 탈퇴하게 된 경우 정회원 내에서 재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 [임원진]**

1. 회장은 동아리 내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2. 부회장은 연습 일정 인원 파악 및 회장 보조를 수행한다.

3. 총무는 회비 총괄 및 재정 관리를 수행한다. 필요시 예산 명세를 정리하여 회장/부회장 및 부원들에게 보고한다.

**제 4조 [집행부]**

1. 집행부는 임원진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부원이 임시로 집행부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 5조 [집행부 회의]**

1. 집행부 회의는 집행부와 주 1회 이상 진행한다.

2. 집행부 회의는 반드시 문서로 기록해야 한다.

3. 집행부 회의의 안건은 회의 전까지 종합해야 한다.

**제 3장 회원**

**제 1조 [회원 자격 및 의무]**

1. 본 동아리의 회원은 숭실대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2. 본 동아리 회원은 무대준비를 위한 정기연습 시간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를 진다.

3. 본 동아리 회원은 정기회의 시간 안건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

4. 본 동아리 회원은 각 무대에 대해 자유롭게 참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 2조 [회원의 가입]**

1. 본 동아리의 회원은 매년 3월(내지 4월) 동아리 박람회 또는 SNS 공고를 통해 모집한 다.

2. 신규 회원은 지원서 작성을 통해 지원이 완료되며, 학기 중 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3. 정해진 모집 기간 이외의 회원 모집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통해 재모집공고 기간 및 방 법을 정한다.

**제 3조 [회원의 탈퇴]**

1. 본 동아리 회원의 탈퇴는 임원진 또는 집행부에 직접 탈퇴 의사를 표현한다.

2. 회원 탈퇴의 경우 동아리 회비를 환급하지 않는다.

3. 공연 일정이 확정된 후 탈퇴를 요청한 경우 해당 공연 이후에 성립한다.

**제 4장 회의**

**제 1조 [정기 모임]**

1. 본 동아리는 주 2회 이상의 정기 모임을 한다.

2. 특별 야외활동 이외의 연습은 동아리 소재지(이하 동아리방)인 학생회관 128호 혹은 연습실(연습실을 대관 하였을 경우)에서 진행한다.

3. 동아리 정기모임은 활동 인원 모두가 참여한다.

4. 불가피한 사유의 경우 회의 후 해당 부원의 불참을 인정한다.

5. 정기모임의 결석은 정기모임 요일 이전 임원진에게 사전에 공지한다.

**제 2조 [총회]**

1. 총회는 각 학기 개강 전 연간 2회를 필수로 한다.

2. 총회에서는 다음 학기 운영방향, 결산안 보고, 동아리 사업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 5장 재정**

**제 1조 [수입]**

1. 동아리의 수입은 총무가 담당하고 매달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2. 본 동아리의 수입은 이월금, 동아리 회비, 동아리 지원금, 대회 상금, 찬조 공연비 등이 있다.

3. 동아리 수입의 전체는 동아리 운영 목적에 어긋나는 곳에 사용할 수 없다.

**제 2조 [회비]**

1. 본 동아리의 모든 회원은 학기 별 총회를 통해 지정한 일정액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2. 본 동아리의 회비는 동아리 모두가 참여하는 활동비로 사용한다.

3. 본 동아리의 회비는 개인적인 사용이 금지된다.

**제 3조 [결산보고]**

1. 총무는 각 학기 별로 있는 총회를 통해 결산을 보고한다.

**제 6장 동아리 등록**

**제 1조 [등록]**

1. 동아리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숭실대학교 학칙 및 동아리연합회 회칙에 따른다.

**제 7장 부칙**

**제 1조 [회칙 발효]**

1. 각 개정안의 개정 회칙은 다음 개정일부터 시행한다.

초판 [2020.03.31]

개정 1판 [2022.03.31]

**제 2조 [회칙 개정]**

1. 본 동아리의 회칙 개정은 총회에서 회원의 투표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2. 회칙 개정은 반드시 정회원의 2/3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